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변경〉

■ 강성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941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성희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3. 12. 15.

다. 회 부 일 : 2023.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고 업무용 사용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은 법인이 해당 차량의 업무용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이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로 세무당국이 법인의 운행기록 작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행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

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Ⅲ. 검토의견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변경

현 행	개정안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제27조의2) ○ 대상: 업무용승용차 * <신 설> ○ 손금산입 비용: <u>업무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u> *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 취득·유지에 필요한 비용) **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또는 상응하는 임차료,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연간 800만원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손금산입) ○ 관리·감독: - 법인: 관련 명세서 제출 의무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변경 ○ 대상: 업무용승용차 * <u>시가 7천만원 이상인 업무용승용차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u> ○ 손금산입 비용: <u>업무승용차 관련비용</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4.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강성희의원안 2023. 12. 15. 발의(의안번호 25941)

□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되, ② 업무용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의 구분 없이 모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손금산입을 위한 명확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제도 도입 전에도 제23조 및 제27조¹⁾에 따라 법인의 업무사용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임차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동 제도가 도입되었음.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에 따라 현행법령은 업무용 사용금액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고가차량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하여 연간 손금산입한도를 정하고 있음.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게 됨.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려는 부분과, ② 업무용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의 구분 없이 모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현재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다른 유형자산에 비해 규제를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사례(예: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구입 후 가족들이 각자의 자가용으로 사용)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고가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가차량의 사적 이용 등의 탈세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도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업무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이에 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세무서장에 의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현행법령은 고가차량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하여 연간 손금산입한도를 정하고 있음.

특히, 최근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이용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제도 등이 도입²⁾된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둘째, ② 업무용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의 구분 없이 모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개정안과 같이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의 작성 및 관리·감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줄이고 손금불산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현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운행기록 작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2) 2024년 1월 1일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시인성이 높은 연록색 번호판을 적용하게 됨.

은행기록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과세당국이 허위로 작성된 은행기록을 적발하고 입증하는 데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이³⁾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량의 가격에 관계 없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한 측면이 있음.

3)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IV. 입법의 재정영향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 차량으로 제한하고 손금산입 요건에서 업무용 규정을 삭제할 경우 법인세는 2025년 1,475억원, 2029년 1,475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7,376억원(연평균 1,47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1,475	1,475	1,475	1,475	1,475	7,376	1,475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문 의 처

02)6788-5158